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영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2019년 하반기부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2017.3.15)한 지역(한양도성 내부 ‘녹색 교통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상시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경우 ‘녹색교통지역’에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령간 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과태료 2중 부과 소지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기 시행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간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과태료 2중 부과 소지를 없앨 필요성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